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4. 10.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7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11
제4장 지역개황	14
제5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5
제6장 대안의 설정	17
제7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 설정	21
제8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30
제9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제10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32
제11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5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도청을 이전하고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기능, 문화, 산업 및 정주 환경이 갖추어진 자족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특색있고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 본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신도시의 완성 단계에 해당됨
- 또한,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1.2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근거

- 본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및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실시근거

구 분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u>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 본 사업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금회 3단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별표3] 【비고1】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표 1.2-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게획 승인 전
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본 사업	○ 총 면적 : 900,196.8㎡ - 총 면적 중 도시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 및 R&D) : 151,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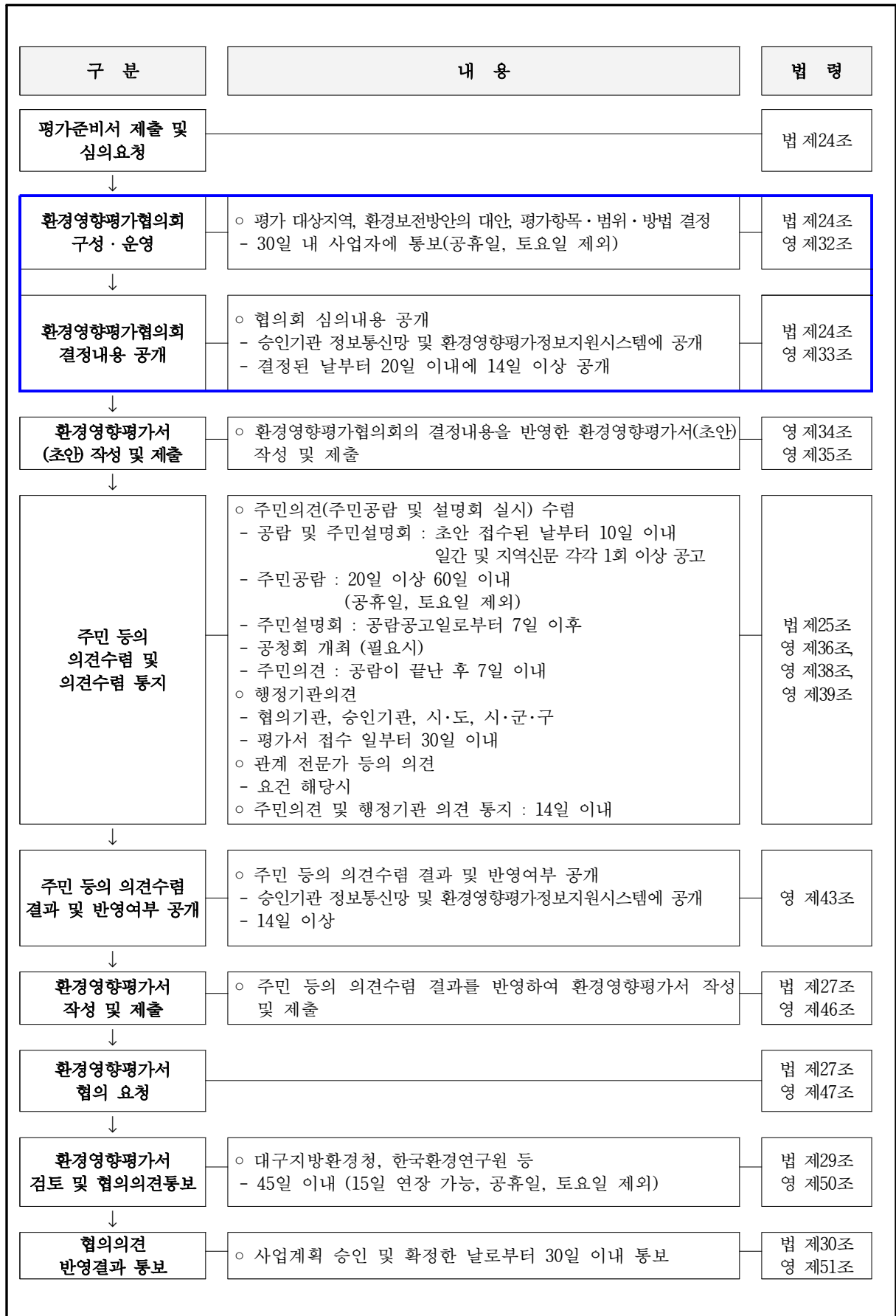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또한,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100만㎡ 이상) 및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50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됨

〈표 1.2-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그림 1.4-1)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3 사업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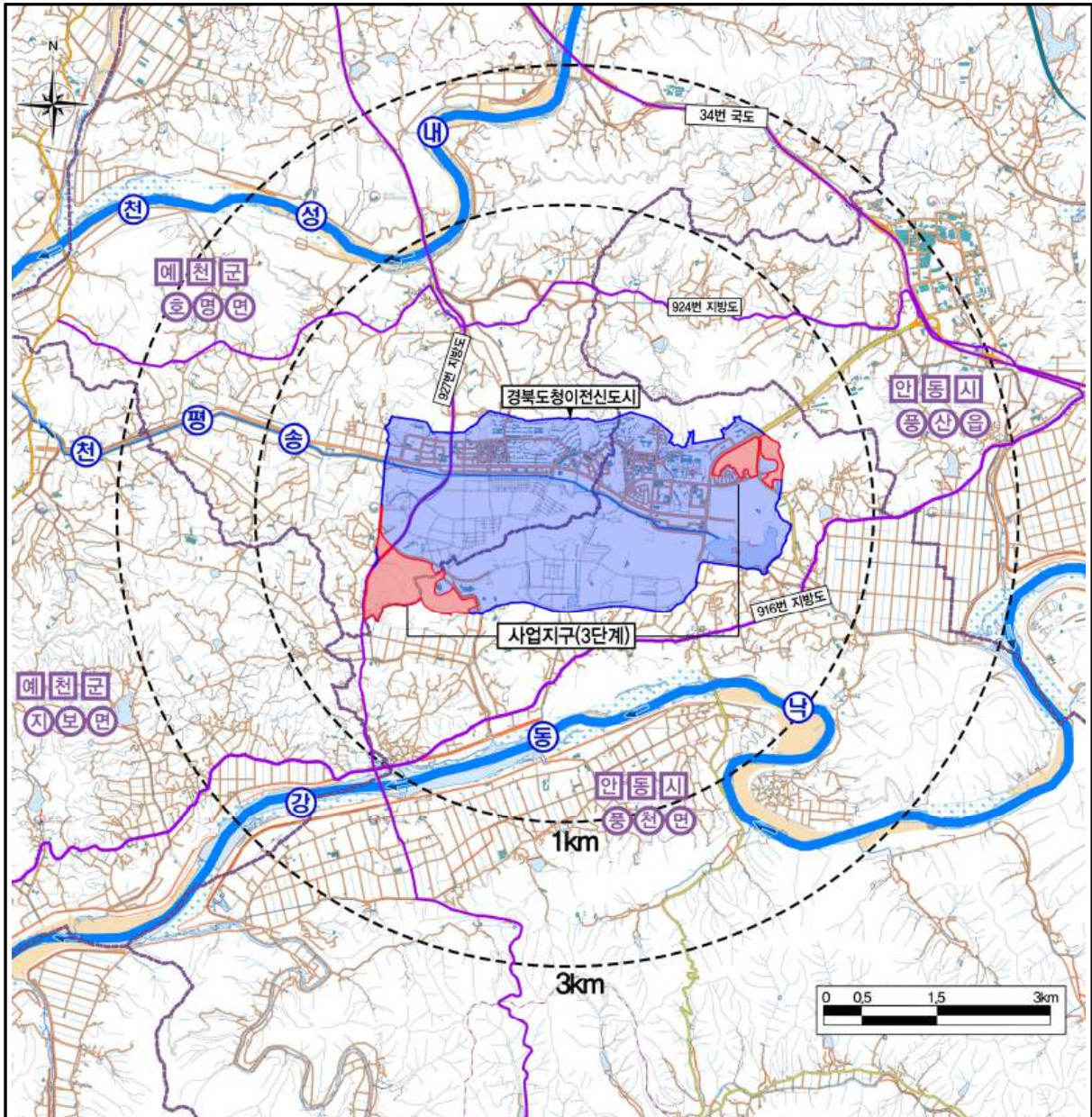
- 2008. 06. 09 :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 2010. 01. 04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구지방환경청)
- 2012. 06. 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구지방환경청)
- 2017. 08. 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구지방환경청)
- 2023. 03. 16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구지방환경청) (부지면적 증가, 사업기간 변경 등)
- 2024. 09.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 09. ~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예정)
- 2024. 10.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예정)

1.4 사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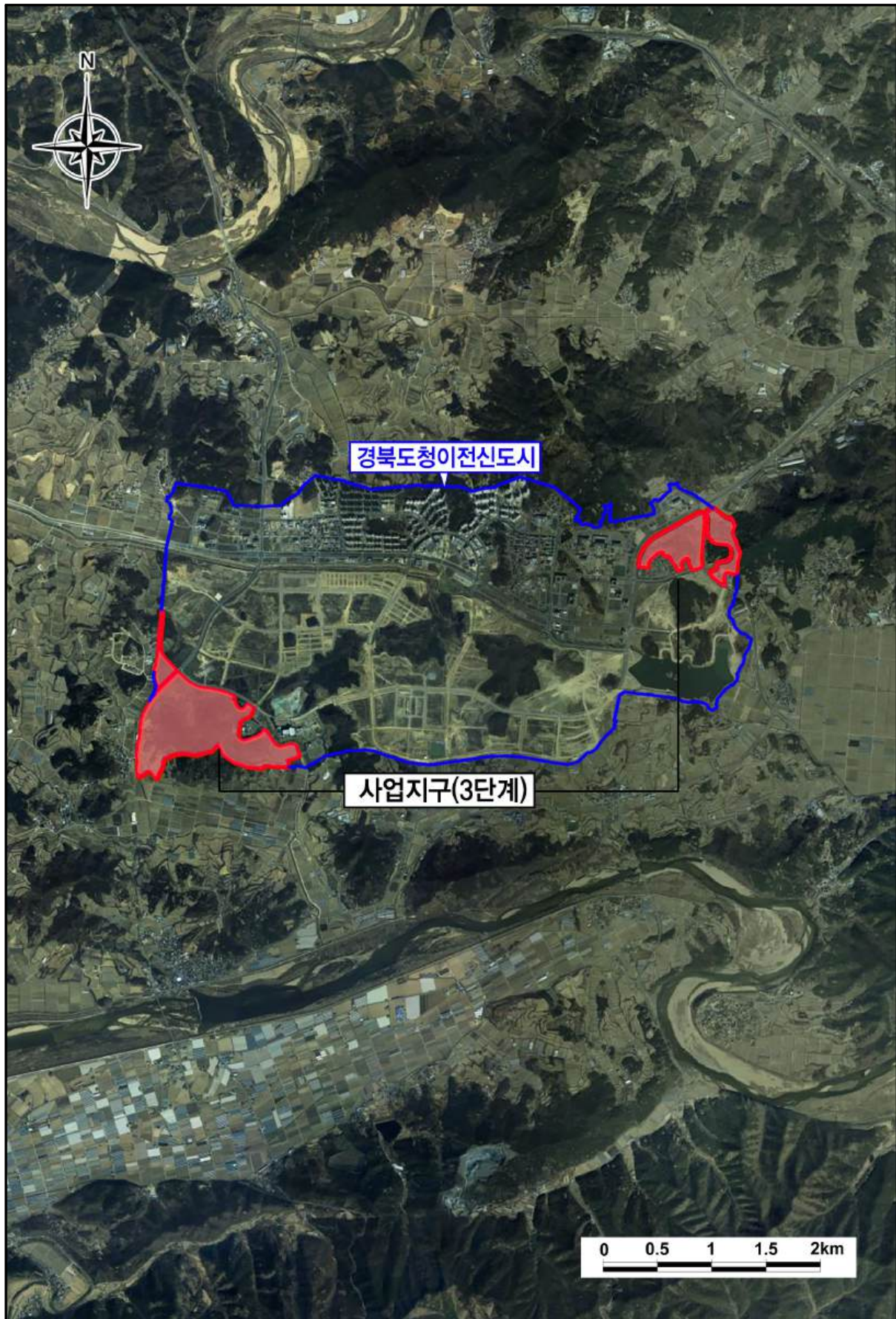
-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사 업 규 모 : 총면적 10,966,305.5㎡ 중 **금회 3단계 900,196.8㎡**
- 추 정 사 업 비 : 총 2조 1,586억원
- 사 업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사 업 기 간 : 2024년 ~ 2027년
- 승 인 기 관 : 경상북도
- 협 의 기 관 : 대구지방환경청

1.5 사업의 기대효과

-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
 - 유교·역사 문화도시 구현, 관광중심도시로서의 기능 부여, 역사와 전통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 저탄소 녹색도시를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조성
 -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도입, 물순환 에코시티 건설
- 경북에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명품행정 지식산업도시 조성
 - 광역행정 및 정치 중심도시, 지식 및 비즈니스 산업을 촉진하는 기능 유치, 교육·문화 기능 창출



(그림 1.4-2) 사업지구 위치도



(그림 1.4-3) 사업지구 위성사진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01. 22, 환경부』에 의거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 기 협의를 완료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설정한 평가항목별 범위 등을 준용하고,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였음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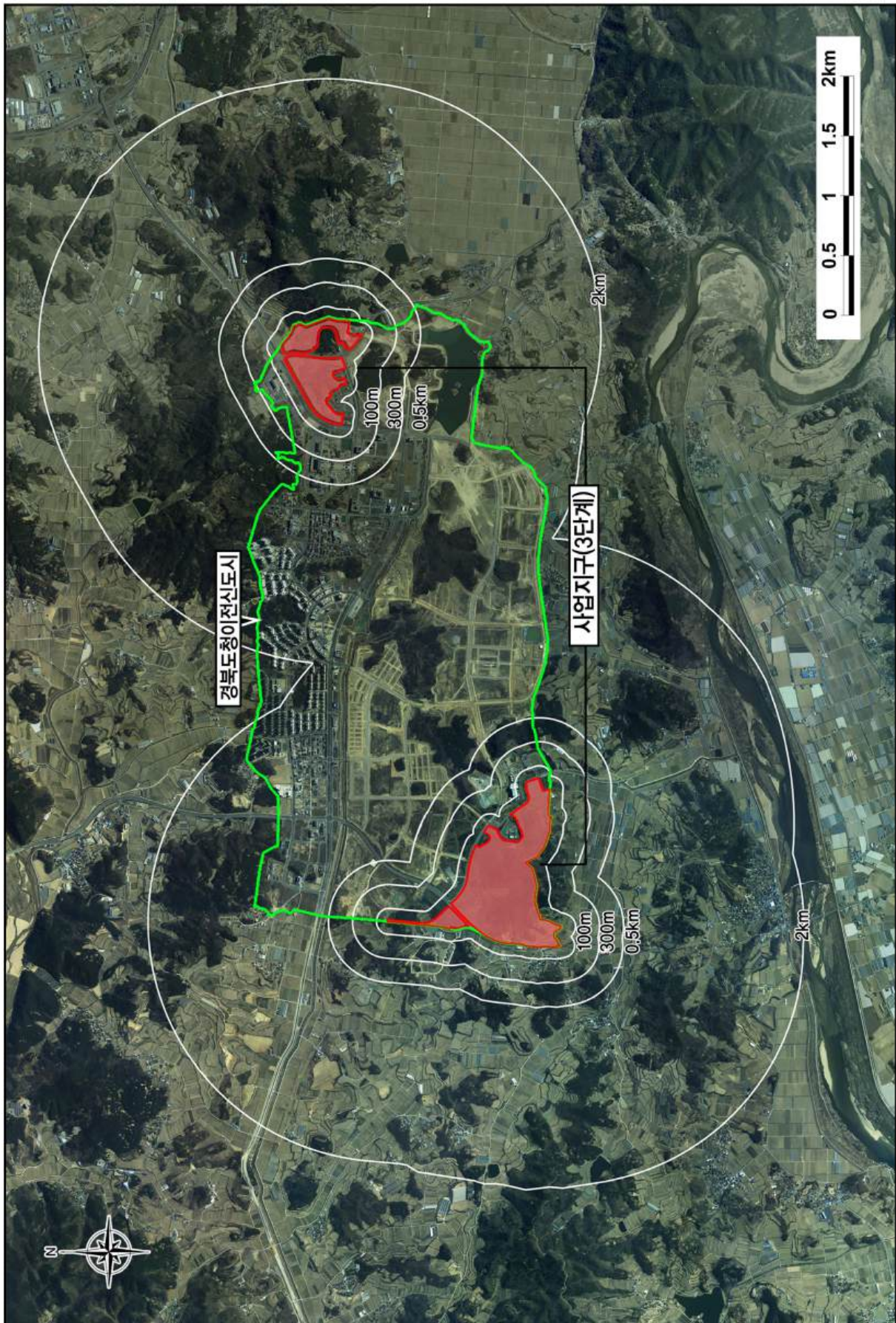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100~300m (분류군별)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 부지기상 (12개월) 및 4계절 상층기상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및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등의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2.0km)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을 고려하여 2.0km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악 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2.0km)	○ 운영시	○ 본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을 고려하여 2.0km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온실가스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기상(12개월) 및 상층기상(4계절), 대기질 및 악취(지구경계로부터 2.0km) 설정

〈표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2/2]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수 환경 분야	수질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오수 및 토사 유출 등, 운영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 유출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유출량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 사업지구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토 양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지형·지질	○ 사업지구	○ 공사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공사시 및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0.5km)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을 고려하여 0.5km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위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위락요소 변화 파악을 위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위생·공중보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전파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운영시 전파장해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사회 · 경제 환경 분야	인 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주 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산 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설정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3 평가항목별 영향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영향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2.3-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평가항목		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비고(관련자료)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예측 ○ 사업시행 후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 ○ 주요 종 분포 여부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문헌조사 및 인근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 문헌조사 등
대기 환경 분야	기상	○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정리·분석 ○ 사업지구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자료 분석·검토	○ 안동기상대(최근 10년) ○ 현지조사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연료사용 및 차량 배기가스, 주변 지역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대기오염 가중도 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확산모델링 사용 - AERMOD, CALPUFF 등
	악취	○ 운영시 사업지구 내 유치업종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취 영향 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확산모델링 사용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환경부 관련 평가지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 환경 분야	수질	○ 공사시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및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 운영시 오폐수 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 영향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수리·수문	○ 유출량 변화에 따른 영향예측(수리·수문 해석)	○ 재해영향성검토서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 안동시, 예천군 통계연보
	토양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현황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유발 요인 파악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지형·지질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등에 대한 영향예측	○ 지형도 및 지질도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 지반조사보고서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영향예측	○ 문헌조사 및 사업내용 ○ 폐기물통계조사(환경부)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합성소음도 산출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소음 및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영향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위락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변화 검토	○ 안동시, 예천군 통계연보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위생· 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발암 및 비발암성 물질 건강영향 예측 ○ 필요시 물질별 임계배출량 산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건강영향항목의 평가매뉴얼
	전파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일조장해 영향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예측	○ 사업관련 개발계획 자료 ○ 안동시, 예천군 통계연보
	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주거 영향예측	
	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예측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함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3.1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개요

가. 수립 목적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각 시설별 공간과 녹지공간의 연계를 통해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기본방향

-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 상업업무시설용지 (업무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 및 R&D)
- 도시기반시설용지 (공원·녹지, 도로, 오수중계펌프장, 주유소)
- 유보지

3.2 토지이용계획(안)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표 3.2-1〉 금회 3단계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3단계		
		면적(㎡)	구성비(%)	
총계		900,196.8	100.0	
주거용지	계	3,694.0	0.4	
	근린생활시설	3,694.0	0.4	
상업업무 시설용지	계	47,483.0	5.3	
	업무용지	47,483.0	5.3	
도시지원 시설용지	계	151,580.0	16.9	
	산업시설	110,376.0	12.3	
	R&D	41,204.0	4.6	
도시기반 시설용지	계	678,894.8	75.3	
	공원· 녹지	소계	643,024.9	71.4
		근린공원	445,866.0	49.4
		역사공원	77,551.1	8.6
		뿌리공원	78,076.8	8.7
		완충녹지	14,137.0	1.6
		경관녹지	24,185.0	2.7
		저류시설	3,209.0	0.4
	도로	소계	32,308.9	3.5
		자동차도로	31,274.9	3.4
		보행자전용도로	1,034.0	0.1
	오수중계펌프장		2,360.0	0.3
	주유소		1,201.0	0.1
	유보지		18,545.0	2.1

<표 3.2-2> 전체 및 3단계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전체		3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10,966,305.5	100.0	900,196.8	100.0	
주거 용지	계		2,577,830.8	23.6	3,694.0	0.4	
	단독	소계	522,523.3	4.8	-	-	
		필지형	429,252.3	3.9	-	-	
		블록형	93,271.0	0.9	-	-	
	공동	소계	1,970,546.5	18.0	-	-	
		아파트	1,970,546.5	18.0	-	-	
근린생활시설			84,761.0	0.8	3,694.0	0.4	
상업 업무 시설 용지	계		925,112.8	8.4	47,483.0	5.3	
	상업용지		212,054.5	1.9	-	-	
	특화상업		80,444.2	0.7	-	-	
	업무용지		578,822.1	5.3	47,483.0	5.3	
	주상복합		53,792.0	0.5	-	-	
도시지원 시설용지	계		373,889.6	3.4	151,580.0	16.9	
	산업시설		261,858.6	2.4	110,376.0	12.3	
	R&D		68,674.0	0.6	41,204.0	4.6	
	복합시설		37,357.0	0.3	-	-	
	지원시설		6,000.0	0.1	-	-	
도시기반 시설용지	계		6,913,593.3	63.0	678,894.8	75.3	
	공원 · 녹지	소계	3,742,776.7	34.1	643,024.9	71.4	
		근린공원	2,227,604.5	20.3	445,866.0	49.4	
		어린이공원	37,408.4	0.3	-	-	
		소공원	40,572.3	0.4	-	-	
		수변공원	177,058.6	1.6	-	-	
		역사공원	115,354.0	1.0	77,551.1	8.6	
		뿌리공원	109,184.2	1.0	78,076.8	8.7	
		완충녹지	141,087.0	1.3	14,137.0	1.6	
		경관녹지	254,238.5	2.3	24,185.0	2.7	
		연결녹지	14,126.8	0.1	-	-	
		저류시설	29,748.8	0.3	3,209.0	0.4	
		하천	93,939.2	0.9	-	-	
		저수지	316,439.0	2.9	-	-	
		공공공지	186,015.4	1.7	-	-	
	도로	소계	1,799,579.1	16.4	32,308.9	3.5	
		자동차도로	1,725,201.9	15.7	31,274.9	3.4	
		보행자전용도로	74,377.2	0.7	1,034.0	0.1	
	주차장		97,009.9	0.9	-	-	
	광장		15,346.3	0.1	-	-	
	양수장		3,381.2	-	-	-	
	오수중계펌프장		10,887.1	0.1	2,360.0	0.3	
	주유소		7,135.5	0.1	1,201.0	0.1	
	교육 시설	소계	소계	378,107.0	3.5	-	-
			유치원	29,634.3	0.3	-	-
			초등학교	143,341.4	1.3	-	-
			중학교	89,071.8	0.8	-	-
			고등학교	61,417.5	0.6	-	-
		대학교	54,642.0	0.5	-	-	
		공공청사		360,964.4	3.3	-	-
		복합커뮤니티시설		26,724.0	0.2	-	-
		문화시설		93,982.9	0.9	-	-
		체육시설		133,203.0	1.2	-	-
		청소년수련시설		12,100.0	0.1	-	-
		종합의료시설		52,085.0	0.5	-	-
		종교시설		35,014.9	0.3	-	-
		한옥형호텔		35,162.5	0.3	-	-
		친환경클러스터		99,379.8	0.9	-	-
		전기공급설비		10,754.0	0.1	-	-
	유보지			175,879.0	1.6	18,545.0	2.1

- 13 -

제4장 지역개황

〈표 4-1〉 지역개황 총괄

구 분	근거법령	안동시	사업지구	비 고
자연공원 지정현황	자연공원법	×	×	청량산 도립공원(경북 봉화군) 사업지구로 약 40.km 이상 이격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개소)	×	사업지구로 약 10.5km 이상 이격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습지보전법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	-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	-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	자연환경보호법	×	×	-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 (3개소)	×	사업지구로 약 10.5km 이상 이격
수변구역	4대강 특별법	◎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안동댐하류” 중권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	◎	내성B 및 낙본C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	×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경유 : 0.1%이하 중유 : 0.5%이하
청정연료 및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 지역	물환경보전법	◎	-	“청정” 지역

제5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금회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지 고려되어야 할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본 사업의 성격 및 사업의 특성,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영향 정도 및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목표는 현황조사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할 계획임

〈표 5.1-1〉 주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안)[1/2]

구 분	환경보전목표					비 고
동·식물상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의 보전					공사시
수질·수리수문	◦토사 등 오염물질의 주변 하천유입 최소화를 위한 SS 목표수질 설정(25 mg/L 이하)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생활환경기준(하천) ◦공사시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공사시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 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총인(mg/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주)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은 변동됨						
◦본 계획의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					운영시	
대기질	◦대기환경기준 준수 - PM-10 : 24시간 평균 100㎍/㎥, NO ₂ : 24시간 평균 0.06ppm이하					공사시
	◦대기환경기준 준수 - PM-10 : 24시간 평균 100㎍/㎥, NO ₂ : 24시간 평균 0.06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방지(저감)시설 설치					운영시
악취	◦「악취방지법」에 따른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운영시

〈표 5.1-1〉 주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안)[2/2]

구 분	환경보전목표			비 고		
위생·공중보건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항목 등의 환경보전목표 적용			운영시		
온실가스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수립			운영시		
소음·진동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			공사시		
	구 분		환경보전목표		비 고	
	주거시설	소 음	65dB(A)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공사장	
		진 동	65dB(V)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진동규제기준(주거지역)	
	교육시설	소 음	55dB(A) (교사 내 기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진 동	65dB(V)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진동규제기준(주거지역)	
	축사시설	소 음	65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 기준	
		진 동	57dB(V)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			운영시		
	구 분		환경보전목표		비 고	
	주거시설	소 음	60dB(A)		「소음진동관리법」의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 기준	
		진 동	65dB(V)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진동규제기준(주거지역)	
	교육시설	소 음	55dB(A) (교사 내 기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진 동	65dB(V)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진동규제기준(주거지역)	
	축사시설	소 음	60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 기준	
		진 동	57dB(V)			
	주) 주거시설의 소음 환경보전목표기준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함					
	◦차량통행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구 분		환경보전목표			
			주간			야간
	소 음	주거시설	65dB(A)	55dB(A)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교육시설	55dB(A) (교사 내 기준)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축사시설	60dB(A)	60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공사시 운영시		
토지이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별표2의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4.01.22』에 준하여 목표 생태면적률 준수			운영시		

제6장 대안의 설정

6.1 대안의 설정

- 본 사업은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기능, 문화, 산업 및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자족도시 육성에 따른 행정,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자족적 신도시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총 면적에 대하여 최초 개발계획의 수립시 사업지구의 환경여건, 자문위원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 본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신도시의 완성 단계에 해당됨
- 금회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시 대안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상에 제시된 방법을 준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설정하였음

〈표 6.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선정유무
○ 수단·방법 (저감방안을 포함한다)	
○ 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규모	
○ 토지이용계획 (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
○ 시기와 순서 (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6.1.1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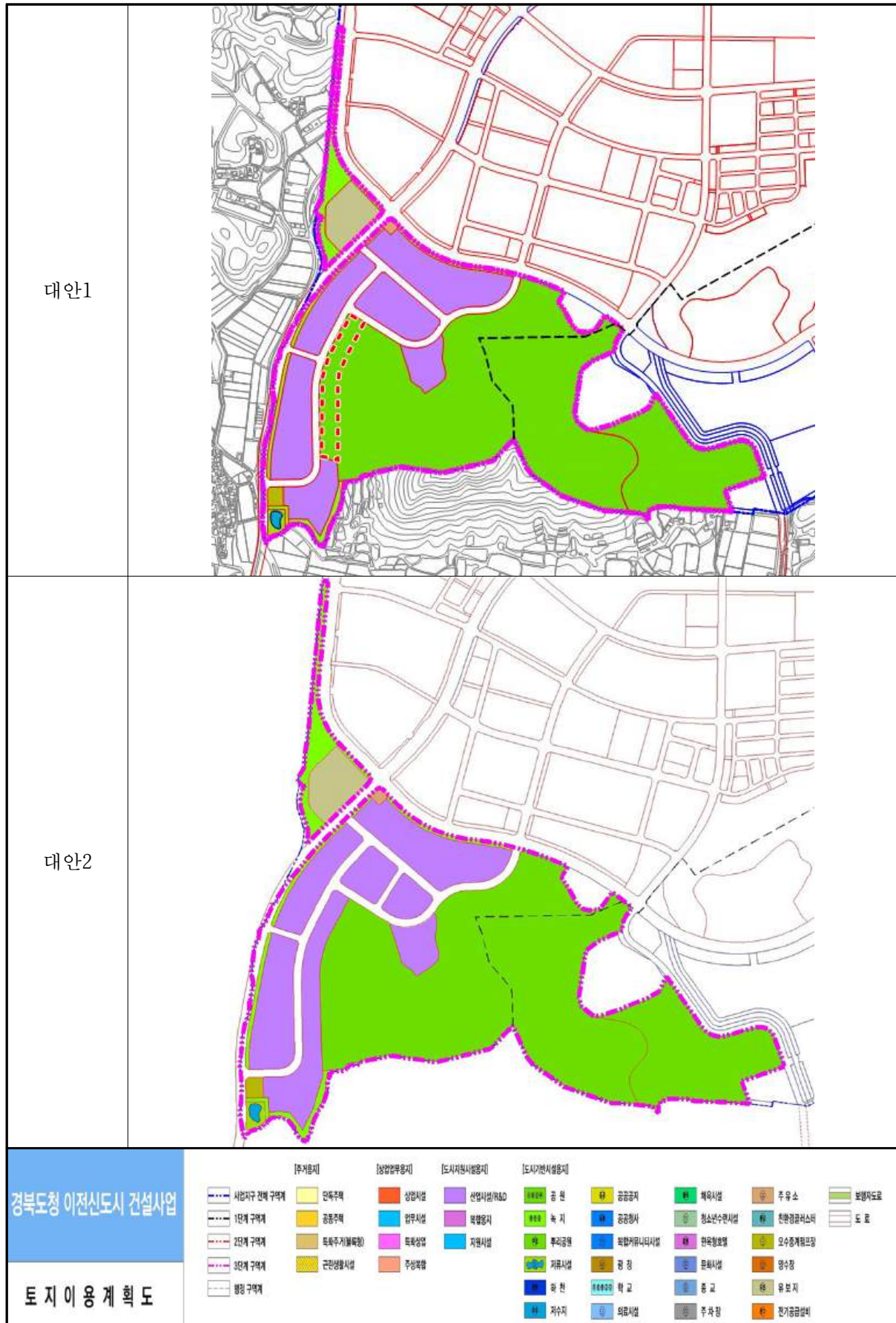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수립하였음

〈표 6.1-1〉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비 고
환경성 및 사회· 경제성	○ 본 사업지구 남서측 산림이 양호한 원형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산업시설 용지 계획으로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 대안2와 비교시 원형지 훼손 최소화로 더 넓은 공원·녹지면적 확보 가능 (2안 대비 19,501㎡ 2.1%) ○ 사업지구 북동측 업무시설과 단독주택 용지 사이 대규모 근린공원을 위치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 산업시설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주변으로 충분한 공원·녹지시설을 배치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 사업지구 남서측 근린공원(14)변 산업 시설 용지 선형배치를 통해 산업기능 강화 및 접근성 제고 ○ 대안1과 비교시 더 넓은 도시지원시설 용지 확보 가능 (1안 대비 17,736㎡, 1.9%) ○ 사업지구 북동측 업무시설과 단독주택 용지 사이 대규모 근린공원을 위치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 적정규모 획지의 산업시설용지 계획으로 원활한 내부 교통체계 확보 ○ 대안1과 비교시 임야훼손지 발생 ○ 원형지 일부 훼손에 따른 사면발생 우려 ○ 선형배치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 폭이 협소(B=45m)하여 대형 규모의 산업 시설 입지 불가	
선 정	◎		
	○ 원형지 훼손을 최소화로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한 대안1이 종합적으로 고려시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2〉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900,196.8	100.0	900,196.8	100.0	
주거용지	계			3,694.0	0.4	3,694.0	0.4	
	근린생활시설			3,694.0	0.4	3,694.0	0.4	
상업업무 시설용지	계			47,483.0	5.3	47,483.0	5.3	
	업무용지			47,483.0	5.3	47,483.0	5.3	
도시지원 시설용지	계			151,580.0	16.9	169,316.0	18.8	감 17,1736.0
	산업시설			110,376.0	12.3	128,112.0	14.2	
	R&D			41,204.0	4.6	41,204.0	4.6	
도시기반 시설용지	계			678,894.8	75.3	661,158.8	73.4	
	공원 · 녹지	소계		643,024.9	71.4	623,523.9	69.3	증 19,501.0
		근린공원		445,866.0	49.4	426,365.0	47.3	
		역사공원		77,551.1	8.6	77,551.1	8.6	
		뿌리공원		78,076.8	8.7	78,076.8	8.7	
		완충녹지		14,137.0	1.6	14,137.0	1.6	
		경관녹지		24,185.0	2.7	24,185.0	2.7	
		저류시설		3,209.0	0.4	3,209.0	0.4	
		도로	소계		32,308.9	3.5	34,073.9	3.7
	자동차도로		31,274.9	3.4	33,039.9	3.6		
	보행자전용도로		1,034.0	0.1	1,034.0	0.1		
	오수중계펌프장			2,360.0	0.3	2,360.0	0.3	
	주유소			1,201.0	0.1	1,201.0	0.1	
	유보지				18,545.0	2.1	18,545.0	2.1



(그림 6.1-1) 토지이용계획 비교

제7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7.1 평가항목의 선정

가. 평가항목별 선정사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표 7.1-1〉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중점항목(13개)	○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위생·공중보건
일반항목(8개)	○ 자연환경자산, 기상, 위락, 일조장해, 전파장해, 인구, 주거, 산업
제외항목(1개)	○ 해양환경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함

〈표 7.1-2〉 항목별 선정사유 [1/2]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자연 환경 분야	동·식물상	중점항목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검토 ○ 사업지구 내 식생보전등급 판정 및 영향검토
	자연환경자산	일반항목	○ 기존문헌 및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일반항목	○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항목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량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 운영시 산업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 영향범위 내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한 영향예측
	악 취	중점항목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의한 악취 영향 예측
	온실가스	중점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 운영시 난방·취사용 연료사용, 산업시설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수 환경 분야	수 질	중점항목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 수계영향 검토 ○ 운영시 오·폐수처리계획 검토
	수리·수문	중점항목	○ 유출량 변화에 따른 주변 수계 등의 영향 검토
	해양환경	제외항목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중점항목	○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유도 -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토 양	중점항목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검토 ○ 공사시 비옥토 활용방안 및 운영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
	지형·지질	중점항목	○ 보전가치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 부지정지시 절·성토에 따른 사면 및 토공발생, 비옥토 유실 영향 검토

〈표 7.1-2〉 항목별 선정사유 [2/2]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항목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량 검토 ○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소음·진동	중점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영향 검토 ○ 운영시 공장소음 및 도로교통에 의한 주변지역 소음영향 검토
	위락	일반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요소 변화 검토
	경관	중점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및 경관계획 수립 -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
	위생·공중보건	중점항목	○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검토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전파장해	일반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검토
	일조장해	일반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검토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일반항목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주거	일반항목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주거현황 파악
	산 업	일반항목	○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산업현황 파악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함

7.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가. 현황조사 항목 및 범위 설정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질(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현황조사 지점을 선정하였음
- 동·식물상은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분류군별)을 조사하고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23-72호』을 참고하여 분류군별(계절별) 조사를 계획하였음

〈표 7.2-1〉 동·식물상 조사항목 선정

항 목		현황조사항목	조사범위
자연생태 환경분야	식물상 및 식생	○ 식물상 - 관속식물의 분포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 법정보호종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 식생 - 주요식생의 분포현황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로부터 100~300m)
	포유류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조류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양서·파충류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육상곤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어류 및 저서성대형무 척추동물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 생물학적 수질평가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주) 조사항목 및 조사범위는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표 7.2-2〉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항 목		현황조사항목	조사범위
대기환경 분야	기 상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km 이내
	악취	○ 복합악취 ○ 지정악취 :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so-발레르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 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발레르산, n-뷰티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km 이내
수환경 분야	지표수질	○ pH, DO, BOD, COD, SS, CN, As, Hg, T-P, 유량, 수온, 6가크롬, 카드뮴, 납, T-N, ABS, 총대장균군, PCB	사업지구 주변수계
	지하수질	○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납, Hg, CN, 6가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페놀	사업지구 주변 지하수질 사용지점
토지환경 분야	토 양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시안, 페놀, BTEX,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분야	소음·진동	○ 소음(환경기준), 진동(환경기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위생·공중보건	○ 스티렌, HCl, NH ₃ , 황화수소, HCN, Hg, 포름알데히드, Ni, Cr ⁶⁺ , 염화비닐, Cd, As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대기질 및 악취(지구경계로부터 2.0km) 설정
2. 조사지점은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현황조사 방법 및 계획

- 현황조사 방법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등의 다양한 방법 중 다음과 같이 조사할 계획임

〈표 7.2-3〉 현황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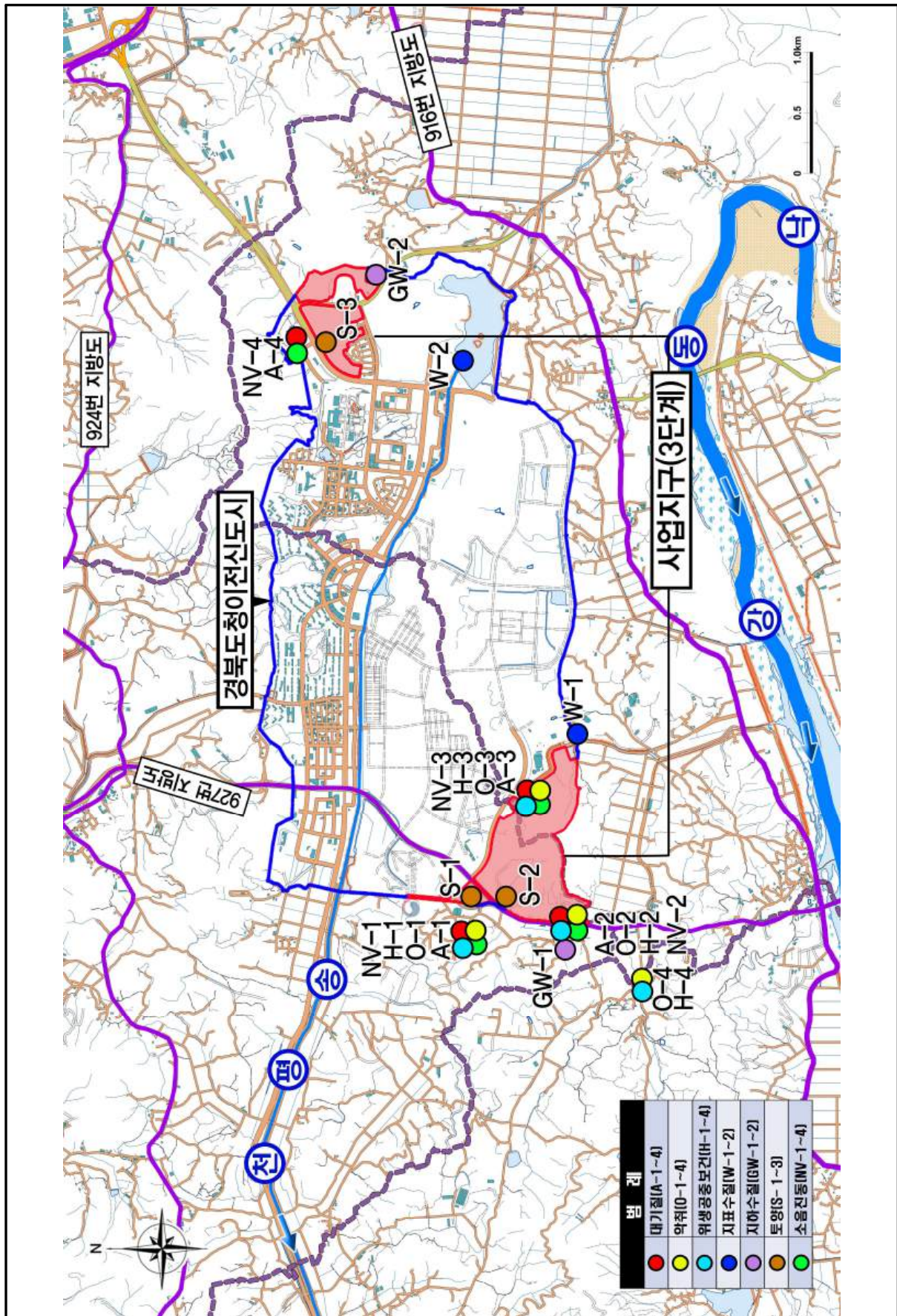
평가항목		조사방법	비 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현황조사 및 탐문조사	○ 문헌조사 포함
	자연환경자산	- 계절별 3회 조사	
대기환경	기 상	○ 부지기상조사(12개월) ○ 상층기상조사(4계절×3일 측정)	○ 문헌조사 포함
	대기질	○ 현황조사 : 4지점×3회(3일 측정)	○ 문헌조사 포함
	악 취	○ 현황조사 - 복합악취 : 4지점×3회(1일 측정) - 지정악취 : 2지점×3회(1일 측정)	○ 문헌조사 포함
수환경	지표수질	○ 현황조사 - 지표수질 : 2지점×3회	○ 문헌조사 포함
	지하수질	- 지하수질 : 2지점×3회	
토지환경	토양	○ 현황조사 : 3지점×3회	○ 문헌조사 포함
생활환경	소음·진동	○ 현황조사 : 4지점×3회	○ 문헌조사 포함
	위생·공중보건	○ 현황조사 : 4지점×3회	○ 문헌조사 포함

주)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기상(12개월) 및 상층기상(4계절) 계획
2. 조사방법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표 7.2-4〉 항목별 조사지점 선정

구 분		주 소	위치명	비 고
대기질	A-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563-12	금능2리 비접골 경로당	-
	A-2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73-24	금능2리 마을회관	-
	A-3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1	안동장사문화공원	-
	A-4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1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
악취	O-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563-12	금능2리 비접골 경로당	복합악취 +지정악취
	O-2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73-24	금능2리 마을회관	복합악취 +지정악취
	O-3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1	안동장사문화공원	복합악취
	O-4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349-1	암천동 마을회관	복합악취
지표수질	W-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32	도양천 경계부	-
	W-2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29	호민지	-
지하수질	GW-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33-1	가옥	-
	GW-2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9	안동법륜사	-
토양	S-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산 36-2	-	유보지
	S-2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154-2	-	산업용지
	S-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06-3	-	업무용지
소음진동	NV-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563-12	금능2리 비접골 경로당	-
	NV-2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73-24	금능2리 마을회관	-
	NV-3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1	안동장사문화공원	-
	NV-4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1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
위생· 공중보건	H-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563-12	금능2리 비접골 경로당	-
	H-2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673-24	금능2리 마을회관	-
	H-3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1	안동장사문화공원	-
	H-4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349-1	암천동 마을회관	-

주)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그림 7.2-1) 환경질 조사지점도

7.3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7.3-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2]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100~300m (분류군별)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탐문조사 포함) ○ 문헌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탐문조사 포함) ○ 문헌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 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 산의 변화가 예상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 부지기상 (12개월) 및 4계절 상층기상	○ 현황조사 ○ 문헌조사	○ 기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등의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2.0km)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 대기확산모델링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
	악 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2.0km)	○ 운영시	○ 현황조사 ○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 대기확산모델링	○ 본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악취 영향이 예상
	온실가스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문헌조사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예상
수 환경 분야	수질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 토사유출량 산정 ○ 오·폐수발생량 산정 ○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오수 및 토사 유출 등, 운영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 물질 유출 등에 따른 영향 예상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탐문조사 포함) ○ 문헌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유량변화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유출량 변화가 예상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기상(12개월) 및 상층기상(4계절), 대기질 및 악취(지구경계로부터 2.0km) 설정

〈표 7.3-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2]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 사업지구	○ 운영시	○ 현황조사 ○ 문헌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용상의 변화가 수반
	토 양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기존 및 문헌자료 병행 ○ 토양오염 유발 요인 파악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예상
	지형·지질	○ 사업지구	○ 공사시	○ 현황조사 ○ 문헌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및 지질변화가 예상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	○ 본 사업시행으로 공사시 및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 이 예상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부터 0.5km)	○ 공사시 및 운영시	○ 현황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영향이 예상
	위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 위락요소 변화 파악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
	위생·공중보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현황조사 ○ 문헌자료 ○ 사업계획 관련 자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 공중보건 영향여부를 검토
	전파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현황조사 ○ 문헌자료 ○ 사업계획 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 장해 영향검토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 장해 예상
사회 · 경제 환경 분야	인 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가 예상
	주 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의 변화가 예상
	산 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내용 분석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활동 등의 변화가 예상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요 환경영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평가할 계획임

〈표 7.3-2〉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평가항목		영향예측 및 분석기법	비고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예측 ○ 사업시행 후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 ○ 주요종 분포 여부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탐문조사) ○ 인근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 문헌조사 등
대기 환경 분야	기상	○ 안동기상대의 기상자료 정리·분석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자료 정리·분석	○ 안동기상대(최근 10년)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현지조사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연료사용 및 차량 배기가스, 주변 지역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온시설의 대기오염(PM-10, NO ₂ 등) 가중도 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에너지 사용계획 ○ 대기확산모델링
	악취	○ 운영시 사업지구 내 유치업종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영향 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확산모델링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사업내용, 환경부 관련 평가지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수 환경 분야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오·폐수 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 영향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전제해영향성검토서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 문헌조사 및 사업내용 ○ 안동시 통계연보
	토양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현황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유발 요인 파악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지형·지질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옥도 유출, 사면발생 등	○ 지형도 및 지질도 ○ 사업계획 관련자료 ○ 지반조사보고서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수립	○ 문헌조사 및 사업내용 ○ 폐기물통계조사(환경부)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합성소음도 산출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소음 및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영향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예측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 ○ 사업계획 관련 자료
	위생· 공중보건	○ 대기확산모델 이용한 발암 및 비발암성 물질 건강영향 예측 ○ 필요시 물질별 입계배출량 산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건강영향 항목 평가 매뉴얼 ○ 대기확산모델링
	전파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장해 영향검토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일조장해 예측 프로그램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주거 영향	○ 문헌자료 및 사업내용
	산업	○ 관련 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배치계획 및 산업환경 변화 예측	○ 문헌자료 및 사업내용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함

제8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8.1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면적이 900,196.8㎡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인 250,000㎡의 약 360%로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표 8.1-1〉 약식평가 절차 해당여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u> 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규모 (250,000㎡)의 200%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음 ※사업규모 : $900,196.8\text{㎡}/250,000\text{㎡} \times 100 \approx 360\%$
2. 사업지역에 <u>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업임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u>생태·자연도 1등급권역</u>	-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임)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u>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u>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자연공원</u>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u>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u>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제9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9.1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공개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공개기간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시

9.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가. 주민

-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관계기관

- 관할시·군수 : 안동시장, 예천군수
- 승인기관 및 관할지역 시·도지사 : 경상북도
- 협의기관 및 관할유역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다.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안동시 홈페이지, 예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주민설명회 개최

제10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10.1 개요

- 본 사업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3단계)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2010년 01월 04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하였음

10.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 2010. 01. 04(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8)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표 10-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구 분	협의내용	반영결과	비고
I.사업개요	○ 사업명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 ○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사업규모 : 10.96km²(안동 6.340km² 예천 4.625km²) ○ 사업자(승인권자)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 사업규모 : 10,966,305.5m² - 1단계 : 4,257,709.1m² - 2단계 : 5,808,399.6m² - 3단계 : 900,196.8m²	-
II.총괄	○ 본 협의의견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동 협의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협의하여야 함	-	-
III.항목별 협의의견 1.수질	○ 추후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수질 오염 총량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부하량을 재산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오염원별 발생부하량은 실측자료를 토대로 생활계 및 축산계 발생부하량 재산정 · 생활계는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 및 물 사용량을 적용하여 재산정 · 축산계는 전수조사 또는 전국오염원 조사자료로 재산정	○ 반영 - 1단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 예천군과 수질 오염총량 협의를 실시하였음 - 2단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등의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여 안동시, 예천군과 수질 오염총량 협의를 실시하여 관련 문서를 제시하였음 - 금회 3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 오염총량 협의를 실시하겠음	-

구 분	협의내용	반영결과	비고
1. 수질	- 계획인구 100,000인의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검토서 216쪽)	○ 반영 - 전체 계획인구: 100,000인 · 세대수 40,000세대, 가구당 인구수 2.5인 적용 - 2단계 계획인구: 74,491인 · 세대수 29,798세대, 가구당 인구수 2.5인 적용	
	- ‘공공녹지’가 기타지목으로 분류된 근거 제시(검토서 217쪽)	○ 반영 - 건축법 대지의 조경에 의거하여 지자체 건축조례의 대지내 조경 비율을 적용함	
	- 본 사업에서 설치예정인 비점저감 시설은 자연형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연형시설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삭감대상부하비로 재산정	○ 부분반영 -사업지구(2단계)에 해당하는 9개 우수유역 중 1단계 사업시 비점오염 시설을 장치형(여과형)으로 5개소를 기 설치하였고, 장치형(여과형)으로 4개소 설치 계획 - 금회 3단계 비점저감시설 필요시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업지구 하류에 지보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바,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수립 등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수는 1단계 지역에 설치완료한 환경클러스터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할 계획 이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도양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방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수처리수는 저류지 방류 후 도양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도록하였음 - 한편, 지보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해제예정 (2018년 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 산업시설이 사업지구 서측부에 입지 할 계획인바, 주바람방향이 북서풍인 점을 감안하여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충분히 이격하는 방안 등 대기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 사업지구와 인접한 안동기상대 관측자료 조사결과 주풍향은 서 북서풍으로, 친환경클러스터 등은 사업지구 남측 녹지지역에 배치 하여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함 · 2단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산업 시설 용지는 제외함	
	- 간선도로와 인접한 산업시설의 경우 서측의 녹지지역과 위치변경	- 금회 3단계 사업시행시 상층기상 및 부지기상 측정을 통하여 대기질 예측을 실시하고 대기영향을 최소화 하는 저감대책(입주제한 등)을 수립 하겠음	
	- 대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의 입주 제한 등 친환경적 업종 유치		
	○ 운영시 간선도로와 주거지역 사이에 방음벽, 완충공간 등 소음저감을 위한 규모의 녹지폭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 주거지역과 인접한 주요 간섭도로에 소음영향을 검토하고 완충녹지 및 건축선 추가이격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였음	

구 분	협의내용	반영결과	비고
3. 동·식물상	○ 사업시행에 따라 훼손이 예상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식생현황을 보다 상세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지구내 녹지축연계방안을 검토·수립 하여야 함	○ 반영 - 2단계 토지이용계획서수립시 4차에 걸쳐 생태계 전문가(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지구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녹지축 연계방안을 수립하였음 - 금회 3단계 사업시행시 계절별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분포시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방안 검토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여 선형과 일정면적의 패치 형의 녹도 조성 검토	-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지역 및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 하였음 - 금회 3단계 사업시행시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생태면적률 확보시 가급적 자연 지반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자연지반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면적율을 42.0%(목표40%) 확보 하였음 - 금회 3단계 사업시행시 생태면적률을 확보시 자연지반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최대한 수립하겠음	
4. 친환경적 자원순환	○ 안동시 및 예천군내 폐기물매립장,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검토하고 본 사업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인 폐기물처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지구내 1단계 지역에 친환경 클러스터를 계획하여 종합적인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환경에너지종합타운(맑은누리파크) 본 사업과 별도로 경상북도청에서 운영중임	
5. 전파장해	○ 사업지구내로 154kV 안동T/L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바, 송전 선로 경과지 인근에 계획중인 주거 단지에 전자파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리주체인 한전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파장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함	○ 사업지구내 고압송전선로는 1단계 지역에 지중화하여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송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검토 등. 끝.		

제11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6조

나. 협의회 구성·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개별방문 및 설명)
- 심의안건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기술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결정

〈표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경상북도 신도시조성지원과	과장	노○○	-
위 원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고○○	협의기관 소속
위 원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팀장	서○○	승인기관 소속
위 원	(주)중천엔지니어링	상무	박○○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 원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신○○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부연구위원	백○○	협의기관 추천
위 원	안동시 환경관리과	과장	박○○	관할 지자체 추천
위 원	예천군 호명읍	읍장	이○○	관할 지자체 추천
위 원	예천군 호명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문○○	주민대표
위 원	안동대학교	교수	김○○	시민단체 추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한국을 넘어 세계로!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요청[경북도청이전신도시(3단계) 실시설계 등]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도에서 시행중인 안동시 풍천면 ~ 예천군 호명읍 일원「경북도청이전신도시(3단계) 실시설계 및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거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24조(평가항목 범위등의 결정)의거 서면심의를 요청하오니, 평가준비서 심의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24.10.0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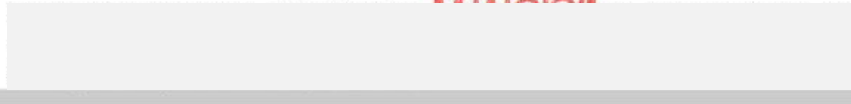
※ 회신방법 : 우편, 공문 또는 이메일(hsw09218@korea.kr)회신가능

-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별첨) 1부.
 2. 협의회 개최계획 1부.
 3. 심의의견서 1부.
 4. 서약서 1부.
 5. 심의 수당 청구서 1부.
 6. 안내사항 1부. 끝.

경 상 북 도 지사



수신자



주무관 한상욱 신도시개발팀 신도시조성지 진결 2024. 9. 23.
장 송승훈 임과장 노성호

협조자

시행 신도시조성지원과-1481 (2024. 09. 23) 접수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s://gb.go.kr/Main/index.html>

전화번호 054-880-4232 팩스번호 054-880-4249 / hsw09218@korea.kr / 비공개(5)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1/1

(그림 1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요청 알림

1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총괄의견

- 경북도청신도시 3단계 건설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도시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 및 R&D)는 현재 진행중인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3단계 사업지구는 남서측 및 북동측 총 2개로 구성됨에 따라 각각의 평가 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3-72호)에 근거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총 면적에 대하여 최초 개발계획의 수립시 사업지구의 환경여건, 자문위원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 여러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본 대안선정은 적정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설정하여야하며, 평가서 내 항목별 평가방법, 조사결과, 인용자료 등은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 공람 및 설명회 등에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평가 신청 대상 아님.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협의회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4. .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조성사업으로, 상위 행정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 협의된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1,2단계)과 인접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누적 환경영향 및 주변 자연환경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3.4.)」에 따라 협의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작성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2.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 하천 등과 사업지역의 녹지 등이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 수립
- 토지이용 목적이 서로 배치(주거시설과 공장 등)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완충녹지를 조성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2/14)

-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검토.

*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07.)」 참고

3. 지역개황

- 지역개황 조사 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민원 사항을 사전에 탐문조사, 보도내용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정리·제시하여야 함.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6.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설정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 등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의 선정사유와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또는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 실시하여야하며, 생활환경의 안전성 항목 내 환경기준 부합성의 조사범위 중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 관련 물질은 인접한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설정
- 자동기상관측장비 사용하여 최소 1년간 부지기상 측정하고, 대기질·악취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산업단지 평가범위인 2km로 설정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해당없음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 시 주민 등에게 평가서 초안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요약서”를 작성, 활용하여야 함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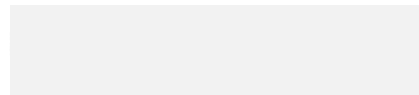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함(필요시)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해당없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첨부
 -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12.10, 환경부)」 참조

2024. 10. 11.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4/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괄 의견

- 본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평가서(초안)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을 반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함
 - 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할 것
2.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지역개황 : 의견없음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은 사업의 특성과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황조사, 중점검토, 제외항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검토범위 등을 설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의견없음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 수렴 시 적극적으로 홍보(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하여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되도록 할 것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의견없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자연 훼손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친화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024. 10. 11.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5/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괄 의견

- 본 심의의견은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평가준비서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추진 되어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특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2. 토지이용계획안

- 오수중계펌프장은 악취유발시설 및 기피시설이므로 외부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위치를 변경하거나 차폐를 고려해야 하며, 악취방지시설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지역개황

- 의견 없음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시 계절 등을 고려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지점을 연속적으로 또는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지점만 추가로 조사하여 직접경비는 줄이고 인건비를 늘려 중점검토 항목의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기질 전지점의 3일 측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점 및 횟수를 줄이는 방안 검토.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약식평가 대상 아님.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의견 없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산업시설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주변 적절한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필요함

2024. 09. 26.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총괄 의견

- 경북도청신도시 3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 의견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01. 22, 환경부』에 의거 평가 대상지역은 적정하게 설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급회 선정된 대안I 적정하다고 판단됨.(산업시설용지 최소화)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추후 평가서상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작성 규정 및 안내서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과 같이 진행하고,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4. 10. 07

환경영향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7/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 괄 의 건

- 본 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을 대상으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
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기협된 1, 2단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및 동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업종 및 유해배출물질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
변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미치는 생활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계획지구 주변으로 1, 2단계시 기협의된 주거시설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금회 3단계 건설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평가대상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계획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기협의된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의 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금회 3단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시설의 용지의 입주업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산업시설 운영
으로 인한 생활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조성
및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3. 지역개황
 - 의견 없음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8/14)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동·식물상] 계획지구 내 산림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종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서식종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함(계절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선정)
- [대기질·악취] 계획지구 주변 산업시설을 포함한 배출원 현황을 파악하고 인접한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연료사용량, 유발교통량, 생산공정 고려). 또한 계획지구 주변 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을 주요 예측지점으로 선정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지형·지질] 주요 절성토 구간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경관] 계획지구 주변 주거지역, 도로 등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및 산업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음·진동] 공사 및 산업시설의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을 면밀히 예측하고 계획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의견 없음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기협의된 1단계 및 2단계 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여 금회 3단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24. 10. 0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 관 의 건

- 본 준비서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서 작성하여야 하고
- 추후 우리 시와 수질오염총량 협의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배출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특이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안
 - 자연지반 녹지를 최대한 확보 바람
3. 지역개황
 - 특이사항 없음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특이사항 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특이사항 없음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공사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적극반영 바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2024. 10.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0/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괄 의견

- 경북도청 신도시 3단계 건설사업이므로 인근 신도시 거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신도시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변화 및 생활환경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수립 및 환경영향이 평가되어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 토지이용계획안
 - 기존 녹지 공간을 최대한 보존한 건설계획 수립을 요청함.
3. 지역개황
 - 1,2단계 환경영향 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후 반영요청.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공사시, 운영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민들에게 자료를 실시간 공개할수 있도록 요청함.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1,2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산업시설로 인한 교통, 환경 영향이 주거지역에 최소화 될수 있도록 완충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요청.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1,2단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인근지역 데이터 센터 건설과 첨단 산업단지 건설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약식평가 사업으로 적합함.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1/14)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를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시된 주민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9.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협의내용 반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주기 바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메모리얼파크, 산업단지등의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1,2,3단계 개발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 시설 설치, 운영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전파영향등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검토 요청.

2024.10. 7.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2/14)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총 관 의 건

- 경북도청 신도시의 3단계 건설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나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녹지면적을 최대한 수용한 대안1이 적정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평가에 미치는 주변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존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평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 행 정 사 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4. 10 .

환경영향평가자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3/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 총 관 의 건

○ 본 사업은 3단계사업으로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무난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질 현장조사에 대하여 아래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기 바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계획안
 - 의견없음
3. 지역개발
 - 의견없음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5.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이전단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6.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질 현장조사는 계절별, 월별, 일별 측정시 각 회당 3회씩 측정하고 측정값을 평균을 내지 말고 범위로 제시하기 바람.
7. 약식절차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내용을 보고서에 첨부하기 바람.
9.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의견없음
10.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없음

2024. 10. 7

(그림 1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4/14)